

# 태권도심사관리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기원 정관 제50조에 의한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하 "국기원")의 태권도승품·단 심사(이하 승품·단심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 세계 태권도인의 심사 관리의 체계화 및 표준화를 도모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유일하게 통용되는 태권도 공인단증으로서의 권위와 가치를 구현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승품·단 심사에 관하여서는 법령, 정관 및 기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2장 심 사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심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사"란 태권도 수련자가 국기원 태권도 승품·단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평가를 받는 과정을 말한다.
2. "심사시행"이란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대한 행정업무와 실기, 이론심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심사추천"이란 태권도 승품·단 심사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적 절차로서 태권도단체, 기관, 지도자에게 부여된 권한을 말한다.
4. "급"이란 태권도 유품·단자가 아닌 일반 수련자에게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부여되는 등급을 말한다.
5. "품"이란 만15세 미만인 자에게 부여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
6. "단"이란 만15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되는 태권도 자격을 말한다.
7. "명예단"이란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수여하는 단을 말한다.
8. "추서단"란 태권도에 대한 공로가 지대한 태권도고단자가 타계하였을 경우 수여하는 단을 말한다.
9. "태권도 사범"이란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국기원 지도자교육을 이수하고 사범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10. "국가협회"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가맹된 각국의 태권도단체를 말한다.
11. '태권도단체'란 일정 규모 이상의 태권도 수련도장(클럽)을 보유한 단체로서 국기원이 인정한 단체를 말한다.
12. "기관심사"란 경찰, 군 등 특수 기관에 대해 국기원이 승품·단 심사를 위임하여 시행하는 심사를 말한다.

13. "해외추천사범"이란 해외에 거주하는 태권도 4단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 대해 추천권한을 부여받은 사범을 말한다.

14. "심사위임"이란 국기원 심사 권한의 일부를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해외사범에게 일정한 조건을 정하여 위임한 것을 말한다.

15. "심사수임단체"란 국기원으로부터 심사 권한의 위임을 승인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심사구분과 과목)** ① 태권도심사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급심사
2. 승품심사
3. 승단심사
4. 특별심사
5. 명예단심사
6. 추서단심사

② 태권도 심사과목은 실기, 이론 및 면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의 심사과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심사수수료)** ①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게 소정의 심사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심사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분한다.

1. "발급수수료"는 승품·단 심사에 따른 등록 및 발급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한다.

2. "위임수수료"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 일부 권한위임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한다.

3. "시행수수료"는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라 수반되는 비용으로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수수료는 원가조사를 통해 산정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④ 심사수수료는 품·단 및 국가별 사정에 따라 차등부과 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⑤ 심사수수료 이외의 기타 비용을 심사수수료 명목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

**제6조(품·단의 위계 및 응시자격)** ① 태권도 품·단의 위계는 다음과 같다

1. 품의 위계 : 1품부터 4품까지
2. 단의 위계 : 1단부터 9단까지

② 승품·단 자격취득에 있어 연한, 연령 및 보수교육 등의 기준으로 응시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③ 국기원 및 태권도 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또는 태권도 보급의 정책적인 사유 등으로 응시자격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응시자격 및 특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7조(응시의 제한)** 징계를 받고 그 징계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심사시행)** ① 국기원은 매년 승품·단 심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심사시행단체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심사시행단체는 심사시행에 관한 연간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말까지 국기원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심사시행단체는 심사장 등 제반시설을 갖추고 심사 시행관련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3. 승품·단 심사는 심사관리규정에 따른 심사과목을 준수하되, 심사시행단체의 사정에 따라 협의하여 심사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
  4. 심사시행단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심사평가 기준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5. 심사시행에 필요한 감독관 . 심사평가위원 . 진행요원 . 의무요원 등을 구성하여 시행한다.
  6. 심사평가위원을 비롯하여 진행요원 . 응시자는 국기원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7. 심사시행에 따른 응시자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8. 승품·단 심사에 따른 심사예식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 ③ 승품·단 심사시행은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직접 지도한 수련생을 심사추천 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되며, 승급심사는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춘 자가 시행할 수 있다.

## 제3장 권한 및 의무

**제9조(권한 및 위임)** ① 태권도 승품·단 심사에 관한 모든 권한은 국기원이 갖는다.

②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의 일부권한을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해외사범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승품·단 심사시행을 위임받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및 해외추천사범은 심사시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2. 심사위임단체는 제3자(단체)에게 심사시행 위임 또는 심사시행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국기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국기원으로부터 심사시행 위임 취소 또는 정지 통보를 받았을 경우, 국기원이 직접 심사를 시행하거나 국기원이 지정하는 단체가 승품·단 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서 제3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책무)** ①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 ②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는 위임받은 승품·단 심사의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 ③ 국기원과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④ 국기원은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에 대해 승품·단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해야한다.

- ⑤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감독관 및 심사위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 ⑥ 제2항에서 제5항까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심사위임 절차)** ①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등이 심사위임 및 시행 권한을 위임 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절차에 따라 국기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및 기관의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로서의 권한은 국기원과 계약체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심사위임의 취소 등)** ①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가 다음 제1호 내지 제9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국기원은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심사위임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심사 관련 지침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상급기관으로부터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
5. 상급기관으로부터 심사 관련 감사지적을 받고,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6. 국기원과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에 대한 심사업무를 방해하거나 분쟁을 일으킨 경우
7. 심사 관련 중대한 문제 등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승품·단 심사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
8. 임원의 갈등·분쟁 및 법적문제 등의 사유로 승품·단 심사업무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심사위임단체가 국기원 승인 없이 제3자(단체)에게 심사시행 업무를 위임한 경우

② 심사위임단체가 심사시행을 위임한 단체에 대하여 위 제1항 각 호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정지 또는 취소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국기원은 직권으로 심사시행단체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다.

③ 심사위임 및 심사시행이 정지 또는 취소된 단체에 대한 심사는 국기원 심사관리위원회가 운영한다.

## 제4장 품·단증 교부 등

**제13조(품·단증의 교부)**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및 태권도심사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품·단 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단증을 교부 한다.

② 품·단증은 “국기원장의 명의”로 교부한다.

③ 품·단증 외 명예단 및 추서단을 발급할 수 있다.

④ 품·단증의 분실 등으로 인하여 품·단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재교부 할 수 있다.

**제14조(품·단증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품·단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품·단증을 취득한 경우
  2. 태권도와 국기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② 위 1항에 의거 그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당사자가 소명을 포기하거나 상별위원회에서 그 소명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한다.

**제15조(기타 행정 사항 등)** ① 품·단증 신청 등 행정절차는 국기원이 정하는 문서 및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온라인 행정처리는 국기원 정보화처리 기준에 따른다.
- ③ 승품·단 심사와 관련한 기타 행정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제5장 각종 위원회

**제16조(심사평가위원회)** ① 승품·단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사평가위원회를 둔다.

- ② 심사평가위원회는 저단자심사평가위원회와 고단자심사평가위원회, 특별심사평가위원회로 구분한다.
- ③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는 매년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 ④ 제1항의 심사평가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심사진행요원을 둘 수 있다.
- ⑤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심사심의위원회)** ① 심사위임 승인 및 취소, 심사시행 결과 등의 승품·단 심사 관련 심의를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심사관리위원회)** ① 제12조에 따라 심사위임 정지 또는 취소된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에 대한 심사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사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심사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9조(감독관)** ① 국기원은 승품·단 심사에 대한 공정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감독관을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기원은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에 대해 감독관을 파견하여 심사시행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경우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에 감독관 파견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감독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10. 7.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정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국내의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위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종전의 심사관리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2. 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정 2014. 0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부 칙** <개정 2015. 03. 0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 26. 태권도심사운영규칙

##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에 의한 태권도 승품·단 심사(이하 “승품·단 심사”라 한다.) 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승품·단 심사업무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승품·단 심사의 위임 및 시행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칙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심사구분)**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1항에 의한 심사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승급심사 : 국기원이 인정한 태권도 사범 자격을 갖춘 자가 태권도 유품·단자가 아닌 일반 수련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2. 승품심사 : 만15세 미만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단, 4품 응시는 만18세 미만자로 한다.
  3. 승단심사 : 만1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사
  4. 특별심사  
가. 장애인(청각, 지적, 시각, 지체)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심사  
나. 월단 등 정책적 판단에 의해 시행하는 심사
  5. 명예단심사 : 태권도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수여자격 심사
  6. 추서단심사 : 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태권도 고단자가 타계했을 경우 상위 단 추서 자격 심사
- ② 위 4호 특별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조(심사과목)**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실기심사는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등 해당 승품·단 심사에 필요한 과목으로 시행한다.
  2. 이론심사는 필답, 논술 등 과목으로 시행한다.
  3. 필요시 각 품·단별로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품·단별 심사과목은 [표 1]의 품·단별 표준심사과목을 준수해야 한다.
- ③ 위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심사과목 외에 심사과목을 추가 신설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은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별도로 심사과목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심사수수료)** ①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5조 2항 1호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임 및 시행수수료를 부과한다.
  1. 국기원이 승품·단 심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 시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2. 국기원으로부터 심사를 위임받거나 직접 시행하는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은 심사 위임 및 시행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3.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5조 2항 2호와 3호를 준용하여 심사수수료를 책정,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심사위임 및 시행수수료는 물가변동을 및 원가조사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④ 해외 심사수수료는 국가별 국민의 실질적 구매력을 감안한 국민총소득(GNI : Gross National Income)에 따라 등급을 두어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수수료를 감면해 부과할 수 있다.
  1. 미수교국 등 보급 차원에 있는 정책적인 국가
  2. 천재지변에 의한 재난을 당한 지역 및 국가
  3. 기타, 감면이 요구된다고 판단된 지역 및 국가
  4. 국가가 인정하는 특수장애우 및 극빈자
- ⑥ 위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6조(응시자격)**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6조 2항에 따라 승품·단 연한 및 연령에 의한 응시자격기준은 [표 2]와 같이 정한다.

- ② 위 1항 외에 보수교육 등을 응시자격으로 정할 수 있고,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③ 응시자가 국적 이외 제3국에서 응시하고자 할 경우 해당국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제7조(심사추천권)** ① '심사추천권'이란 승품·단 심사와 관련해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태권도 사범 등에게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심사추천권은 국기원 4단 이상자로 사범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부여한다.
  1. 국기원으로부터 심사 추천 권한을 부여받은 사범은 자신이 직접 지도한 응시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해외 심사추천권자는 보유단 미만자의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 대해 심사를 추천할 수 있다.
  3. 심사추천권자가 없는 해외 응시자의 경우 국기원 심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국기원이 국가단위로 심사추천권을 위임하지 않은 국가는 해당국가의 국기원 등록도장 사범이 국기원에 직접 심사를 추천하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 ④ 국기원은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 태권도장에 심사추천을 위한 ID를 부여할 수 있다.
- ⑤ 심사추천권자는 국기원에게 부여받은 심사추천 ID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심사추천권자는 직접 지도한 수련자가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경우 심사추천 ID를 사용한다.

2. 심사추천 ID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3. 심사추천권자는 직접 지도한 수련자가 아닌 경우 심사시행단체에 승품·단 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줘야 한다.
- ⑥ 위 항에 정하지 않은 것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자격특례)**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6조 3항에 따라 응시자격 특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태권도 유공자와 관련해서는 7단 이하에 대해 연한 및 연령의 자격기준 단축 혜택을 줄 수 있으며, 적용기준은 [표 3]과 같다.
2. 대학(태권도학과, 태권도전공)에서 태권도를 전공한 자 중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3학년 2학기 종료 전 까지 3단을 보유하고, 4학년 2학기 재학 중인 자) 및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졸업예정자(학사 이수학점 중 80% 이상 이수한 자)에게는 4단의 응시자격을 각각 부여한다. 단, 월단은 허용치 않는다.
3. 월단심사 및 기타 자격특례를 필요로 하는 경우 심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자격특례에 관한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심사시행 위임 및 승인)**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9조 2항 2호에 따라 심사위임단체가 심사시행을 위임할 경우 계약 체결을 통해 권한을 부여한다.

- ② 국가협회, 태권도단체, 기관이 심사위임을 부여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기원에 제출해야 한다.
  1. 태권도 승품·단 심사 위임신청서
  2. 승품·단 심사 연간 시행계획서
  3. 승품·단 심사 시행수수료 승인요청서
  4. 수지결산서 및 수지예산서
- ③ 기존 심사위임단체는 심사위임계약 만료 2개월 이전에 심사위임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통해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승품·단 심사위임에 따른 계약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의 권한과 의무)** ①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임단체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9조 2항에 따른 승품·단 심사시행을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2. 심사위임단체는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2조 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시행단체에 대해 위임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3. 심사시행단체는 위임받은 심사 시행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②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위임 및 시행단체는 태권도 심사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심사위임단체는 매년 12월말까지 심사평가위원 구성과 연간 심사일정 등을 포함한 심사시행 계획을 국기원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심사위원단체는 심사시행단체로부터 승품·단 심사시행에 따른 심사자명부[표 4]와 심사결과를 받아 15일 이내에 국기원에 보고해야 한다.
4. 심사위원단체는 위임수수료와 심사시행단체의 시행수수료를 취합하여 국기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심사위원 및 시행단체는 심사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갖는다.

**제11조(심사시행)** ① 심사위원 및 시행단체는 심사계획에 따른 심사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심사를 시행해야 한다.

1. 심사위원 및 시행단체가 심사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기원에 심사평가위원 또는 감독관을 요청, 시행해야 한다.
  2. 태권도 1~4품 및 1~3단까지는 실기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4, 5단은 실기와 필답심사를 하며, 6단 이상은 실기와 논술심사를 시행한다. 단, 심사위원단체는 필요시 국기원이 규정한 심사과목 이외의 과목을 추가하여 심사시행단체에 시행을 요구할 수 있다.
  3. 태권도 4단 이상 심사는 국기원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위 1항 3호 정기심사에서 1개 과목이 실격한 경우, 1회에 한해 심사수수료를 면제받고 실격과목에 대해 차기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수시심사는 제외된다.
- ③ 특별심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위 1항 2호의 필답 및 논술심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 ⑤ 논술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한국어 또는 영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응시자는 자국어로 작성한 논술의 한국어 번역본 또는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⑥ 공정한 심사시행으로 응시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심사평가위원 구성 및 운영)**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6조 3항에 따른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심사평가위원은 국기원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소지자로 구성한다.
  2. 저단자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6단 이상,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3급 이상의 소지자로 구성한다.
  3. 고단자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9단,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 구성한다. (단, 해외의 경우 1~4품·단 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4단 이상,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3급 이상 소지자로 한다. 5, 6단 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7단 이상, 7단 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8단 이상,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1, 2급 소지자)
  4. 특별심사평가위원은 태권도 9단, 승품·단 심사위원 자격증 1, 2급 소지자로 구성한다.
- ② 고단자심사평가위원 및 특별심사평가위원은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 ③ 저단자심사평가위원은 승품·단 심사시행권한을 위임받은 단체장의 추천에 의해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 ④ 저단자심사평가위원은 5단 이하의 태권도 승품·단 심사를 평가한다.
- ⑤ 고단자심사평가위원은 6단 이상의 태권도 승단 심사를 평가한다.
- ⑥ 특별심사평가위원은 해외, 기관, 국기원 방문 심사를 평가한다.

⑦ 심사평가위원은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심사과목별 심사평가위원은 각 3인 또는 5인으로 운영하고, 응시자 및 심사특성에 따라 심사평가위원 인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2. 위 1호 외 심사진행요원은 심사시행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심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7조 1항에 따라 심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심사심의위원회는 국내와 해외로 구분하여, 위원회별 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 ③ 심사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심의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심사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8조 1항에 따라 심사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② 심사관리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국기원장이 임명한다.
- ③ 심사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심사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15조(감독관 구성 및 운영)** ① 국기원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9조 1항에 따라 감독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감독관은 국기원장이 임명하여 파견한다.
- ③ 국기원장은 심사시행단체의 심사업무를 총괄하는 수석감독관을 임명할 수 있다.
- ④ 수석감독관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 감독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심사평가)**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4호에 따른 심사평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 과목별 평가기준은 [표 5]와 같다.
  2. 실기심사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3. 실기심사 평가기준 및 요령은 [표 6]과 같다.
  4. 필답심사 평가기준은 20문항 중 12문항 이상의 정답을 얻은 경우 합격 처리한다.
  5. 논술심사 평가기준은 [표 7]과 같다.
  6. 심사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과락이 되면 최종 불합격 처리한다.
- ② 심사과목별 채점표는 [표 8]과 같다.
  - ③ 심사평가에 대한 심사결과표는 [표 9]와 같다.

**제17조(심사장)**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2호에 따라 심사장의 제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실기 심사장의 최소 면적은 가로(세로) 15m × 세로(가로) 12m(180㎡ = 약 55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 품새 심사장의 면적은 가로 8m × 세로 8m(64㎡ = 약 19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1회 심사 시 15세 이상 응시자는 6인 이하, 15세 미만 응시자는 8인 이하로 한다.

3. 겨루기 심사장의 면적은 2인 기준으로 15세 이상 응시자는 가로 8m × 세로 8m(64㎡, 약 19평), 15세 미만 응시자는 가로 6m × 세로 6m(36㎡, 약 11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 격파 및 특기 심사장의 면적은 1인당 20㎡(약 6평)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5. 실기 심사장의 대기 장소는 심사 과목당 33㎡(약 10평)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6. 실기 심사장의 바닥은 안전을 고려해 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매트와 조건을 갖춰야 한다.

7. 실기 심사장은 응시자의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 및 재난시설 등의 안전이 허가된 장소여야 한다.

② 심사장 배치 및 평면도는 [표 10]과 같다.

**제18조(복장)**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6호에 따른 복장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시행단체는 승품·단 심사 응시자가 [표 11]과 같이 국기원이 지정된 태권도복과 띠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2. 심사시행단체는 승품 심사 응시자에게 품 도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단, 4품 응시자는 단 도복을 착용할 수 있다.

3. 심사시행단체는 승단 심사 응시자에게 단 도복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심사시행단체는 승품·단 심사 응시자가 도복 이외의 부속물(신발, 모자, 시계,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을 착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5. 심사시행단체는 승품·단 심사 응시자가 도복 이외의 복장은 착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단, 여성 심사 응시자의 경우 도복 상의 안에 백색 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6. 심사시행단체는 승품·단 심사 응시자가 도복 부착물 허용범위는 [표 12]와 같다.

7. 심사시행단체는 심사평가위원과 진행요원이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사시행단체는 위 1항 각 호에 대해 승품·단 심사 응시자에게 사전에 주지시켜야 하며, 위반 시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19조(안전대책)**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8조 2항 7호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심사시행단체는 승품·단 심사시행 시 의료진을 배치해야 한다.

2. 심사시행단체는 응시자 및 심사평가위원, 진행요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심사시행단체는 응시자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4. 심사시행단체는 겨루기 심사 응시자에게 안전보호용구(머리, 몸통, 남심 등)를 착용시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제20조(질서유지 및 징계)** ① 심사장 내에는 감독관, 심사평가위원, 진행요원, 의료진 외

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심사업무를 방해하거나 심사장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징계할 수 있다.

③ 태권도심사관리규정과 태권도심사운영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다.

**제21조(행정사항 등)** ①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15조 3항에 따른 기타 행정처리 등을 정한다.

② 승품.단 응시자는 다음과 같은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심사신청서 1부 [표 13]
2. 국내 1품.단 응시자는 주민등록등(초)본 1부
3. 사진(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1매
4. 장애인은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8, 9단 응시자는 태권도 활동경력 및 이력서 각 1부

③ 온라인 신청 시에는 위 2항의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국기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④ 위 2항의 제출서류 외 보수교육 등의 응시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명예단"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명예단" 요청서 1부
2. 이력서 및 공적조서 1부 [표 14]

⑥ 승품.단 응시자가 국적 이외의 제3국에서 응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 중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재학(재직)증명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중 1부
2. 군인의 경우 근무명령서
3. 각국 대사관 입증서류
4. 추천사범의 확인서
5. 기타 심사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했다는 사실이 기록된 서류. 단, 정부위탁 등 특별한 국기원 교육 등에 참석하여 관련 이수증 및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⑦ 인적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인적사항 변경사실이 기록된 주민등록 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2. 인적사항 변경의 법적 결정문 또는 변경 사실을 공증한 인증서
3. 국기원이 발급한 품.단증 원본과 인적사항이 기록되어 있는 증명서[여권,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등]
4. 기타 변경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⑧ 응시자격 특례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경기실적 특례자는 각 국가 태권도협회장 또는 주최 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2. 공로실적 특례자는 공로를 증명할 수 있는 정부기관의 확인서
3. 본 규칙 제8조 1항 2호에 따른 자격특례자는 총 이수학점 대비 80% 이상의 학점 취득을 확인 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및 지도교수 추천서, 재학증명서(4년제 대학교의 경우 4학년 2학기 재학증명서)
4. 기타 특례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부 칙** <제정 2010.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침) 심사관리규정 및 심사운영규칙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 8.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2. 1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3.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4.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목차

1. 품·단별 심사과목
2. 승품·단 연한 및 연령기준
3. 유공자 특례적용기준
4. 심사자연명부
5. 심사과목별 평가요소
6. 실기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7. 논술심사 평가기준
8. 심사과목별 채점표
9. 심사결과표
10. 심사장 배치 평면도(예)
11. 지정도복 및 띠
12. 도복 부착물의 허용범위
13. 심사신청서(국내 13-1, 해외 13-2)
14. 공적조서

[표 1] 품·단별 표준 심사과목

구 분  응시 품단	실 기					이 론		면 접
	품 새		기 본 동 작	겨 루 기	격 파	필 답	논 술	
	필 수	지 정						
1품		태극 1-8장 중 2지정	●	●				
1단	태극 8장	태극1-7장 중 1지정	●	●				
2품·단	고려	태극1-8장 중 1지정	●	●				
3품·단	금강	태극1-8장, 고려 중 1지정	●	●				
4품	태백	태극1-8장, 고려, 금강 중 1지정	●	●				
4단	태백	태극1-8장, 고려, 금강 중 1지정	●	●	●	●		
5단	평원	태극1-8장, 고려, 금강, 태백 중 1지정	●	●	●	●		
6단	지태	태백, 평원, 십진 중 1지정	●	●	●		●	
7단	천권	평원, 십진, 지태 중 1지정	●	●	●		●	
8단	한수	십진, 지태, 천권 중 1지정					●	●
9단	일여	지태, 천권, 한수 중 1지정					●	●

[표 2] 승품·단 연한 및 연령 기준

응시 품·단	구분 승품·단 연한구분	승품·단 연령구분		연한, 연령의 적용
		단부터 시작한 자	품부터 시작한 자	
1 품			만15세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2, 3품 보유자는 만15세가 경과 되면 단과 같으며 단증으로 교체 하여 교부받을 수 있다.(단 4품은 만18세 이상, 4품 보유자가 4단을 교부 받을 시는 별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li> <li>◎ 태권도 조기 수련자임을 감안하여 품부터 시작한자는 5단까지 승단 연령의 단축혜택을 부여함.</li> <li>◎ 고단자 심사의 연한 및 연령미달자 허용범위는 해당월 심사자 및 해당월 출생자로 한다.(31일까지)</li> <li>◎ 저단자 심사의 연한 및 연령 허용 범위는 심사일로부터 ±15일로 한다.(미달, 초과)</li> </ul>
1→2품	1년		만15세 미만	
2→3품	2년		만15세 미만	
3→4품	3년		만18세 미만	
1 단		만15세 이상		
1→2단	1년	만16세 이상	만15세 이상	
2→3단	2년	만18세 이상	만15세 이상	
3→4단	3년	만21세 이상	만18세 이상	
4→5단	4년	만25세 이상	만22세 이상	
5→6단	5년	만30세 이상	만30세 이상	
6→7단	6년	만36세 이상	만36세 이상	
7→8단	8년	만44세 이상	만44세 이상	
8→9단	9년	만53세 이상	만53세 이상	

[표 3] 유공자 특례적용 기준

분야별	내 용		단축률
경기실적	올림픽 입상자(금-100%, 은-80%, 동-60%)		60%~100%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한 세계적 규모의 태권도 대회 입상자(금-80%, 은-60%, 동-40%)		40%~80%
	지역 대륙별 대회 입상자(금-60%, 은-40%, 동-20%)		20%~60%
공로실적	태권도 지도, 보급 공로자로서 국가 원수로부터 훈장을 수상한 자		50%
적 용 대 회			
구 분	국문명칭	영문명칭	
올림픽	올림픽 (금-100%, 은-80%, 동-60%)	Olympic Games (Gold-100%, Silver-80%, bronze-60%)	60%~100%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한 세계적 규모의 태권도대회	1. 세계태권도한마당 2.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3.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금-80%, 은-60%, 동-40%)	1. The World Taekwondo Hanmadang 2. World Taekwondo Championships 3. World Taekwondo Poomsae Championships (Gold-80%, Silver-60%, bronze-40%)	40%~80%
지역대륙별 대회	1. 아시안게임 2. 팬암게임 3. 올 아프리카게임 4.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5. 유럽태권도선수권대회 6. 팬암태권도선수권대회 7. 아프리카태권도선수권대회 8. 오세아니아태권도선수권대회 (대륙별 한마당, 품새 포함) (금-60%, 은-40%, 동-20%)	1. Asian Games 2. Pan American Games 3. All African Games 4. Asia Taekwondo Championships 5. European Taekwondo Championships 6. Pan American Taekwondo Championships 7. Africa Taekwondo Championships 8. Oceania Taekwondo Championships (Gold-60%, Silver-40%, bronze-20%)	20%~60%
※ 7단 이하에 적용하며, 1회에 한해 적용한다.			



[표 5] 심사과목별 평가요소

과 목	평가요소	평가 시 확인 및 주의사항
기본동작	정확성	준비자세, 서기, 막기, 차기, 지르기 등
품새	완성도	품새 완결, 정확성, 공방목표, 자세의 굴신
	숙련도	속도의 완급, 몸의 중심이동, 힘의 강유, 기의 집중, 기합
	품위	예절, 태도, 도복
겨루기	공격력	시선, 기합, 완급, 강유, 신축, 중심, 기의 다양성, 거리조정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	
격파	손날 완파	시선, 기합, 동작의 완성도
	발 완파	
	자세	
필답	객관식	20문항(10종류)
	주관식	
논술	논술	제목적합성, 분량, 논리 전개, 유사논문 등
면접	면접	기여도 및 공적, 활동경력, 품격 및 인성 전문성, 사회공헌도 등

**[표 6] 실기심사 기준 및 평가방법**

1. 평가는 점수로 표기하며 과목별 평가는 3가지 요소로 평가한다
- 가. 기본동작평가는 정확성을 평가한다.
- 나. 품새평가는 ①완성도, ②숙련도, ③품위 등을 평가하되, 지정 및 필수를 합해 평균치를 산출한다.
- 다. 품새평가의 정확성을 위해 1회 심사에 15세 이상 응시자는 6인, 15세 미만 응시자는 8인을 초과할 수 없다.
- 라. 겨루기평가는 ①공격력, ②방어력, ③기술의 다양성 등을 평가한다.
- 마. 격파평가는 ①손날완파, ②발완파, ③자세 등을 평가한다.
- ※ 각 과목별(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격파) 평가 사례

심사자	심사평가위원 1	심사평가위원 2	심사평가위원 3	판정결과
홍길동	80	55	70	합격
임격정	50	35	75	불합격

- ※ 심사평가위원 3인 중 2인의 평정점수가 각 60점 이상은 합격 판정, 2인의 평정점수가 각 59점 이하는 불합격 판정한다. (심사평가위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평정점수가 각 60점 이상은 합격판정, 3인의 평정점수가 각 59점 이하는 불합격 판정한다.)
- ※ 평정점수는 차등 부과해 기록해야 한다.
- ※ 각 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과락이 되면 불합격 판정한다.
- ※ 품·단별 지정품새와 필수품새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지정품새의 경우 심사 현장에서 각 품·단별 대표자의 추천으로 선정한다.
- ※ 겨루기는 전문선수의 시각이나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숙련의 정도를 평가한다.
- ※ 실기심사 중 기본동작, 품새, 겨루기 평가는 영상으로 촬영, 보관해야 하며, 보존연한은 1년으로 한다.
- ※ 심사관련 문서(심사채점표 등)의 보존연한은 1년으로 한다.

## [표 7] 논술심사 평가기준

### ※ 불합격 처리 예)

1. 출제된 논술제목과 내용이 다른 경우
2. 내용이 논제와 상이하거나 중복된 경우
3. 논술 분량이 부족한 경우
4. 응시자가 작성하지 않은 논술을 제출한 경우
5. 응시자 2인 이상이 동일 논술을 제출한 경우

**[표 8] 심사과목별 채점표**

**1. 기본동작 채점표**

응시품·단      품·단

심사평가위원 :      (인)

응시번호	평가항목		판정점수
	기본동작(지정)		
	정확성	부정확성	
1001			

※ 기본동작의 부정확성으로 판단된 경우 √ 로 표기 후 판정점수를 기록한다.

**2-1. 품새 채점표(1품)**

응시품·단      품·단

심사평가위원 :      (인)

응시번호	평가항목						판정점수	비고
	지정품새 1			지정품새 2				
	완성도	숙련도	품위	완성도	숙련도	품위		
1001								

※ 세부평가항목 미달 시 √ 로 표기 후 판정점수를 기록한다.

**2-2. 품새 채점표(2~4품, 1~9단)**

응시품·단      품·단

심사평가위원 :      (인)

응시번호	평가항목						판정점수	비고
	지정품새			필수품새				
	완성도	숙련도	품위	완성도	숙련도	품위		
1001								

※ 세부평가항목 미달 시 √ 로 표기 후 판정점수를 기록한다.

**3. 겨루기 채점표**

응시품·단      품·단

심사평가위원 :      (인)

응시번호	평가항목			판정점수	비고
	겨루기				
	공격력	방어력	기술의 다양성		
1001					

※ 세부평가항목 미달 시 √ 로 표기 후 판정점수를 기록한다.

4. 격파 채점표

응시품·단                      품·단

심사평가위원 :                      (인)

응시번호	평가항목			판정 점수	비고
	타력				
	손날완파	발완파	자세		
1001					

※ 세부평가항목 미달 시 √ 로 표기 후 판정점수를 기록한다.

5. 필답 채점표

응시단                              단

심사평가위원 :                      (인)

응시번호	평가항목		판정 점수	비고
	필답			
	문항수	정답수		
1001				

6. 논술 채점표

응시단                              단

심사평가위원 :                      (인)

응시번호	성 명	평가항목			판정 점수	비고
		논술				
		제목적합성	분량	기타		
1001						

7. 면접 채점표

응시단                              단

심사평가위원 :                      (인)

응시번호	성 명	평가항목			판정 점수	비고
		면접				
		경력	공적	기타(품위)		
1001						

## 종합(실기, 이론)채점표

응시품·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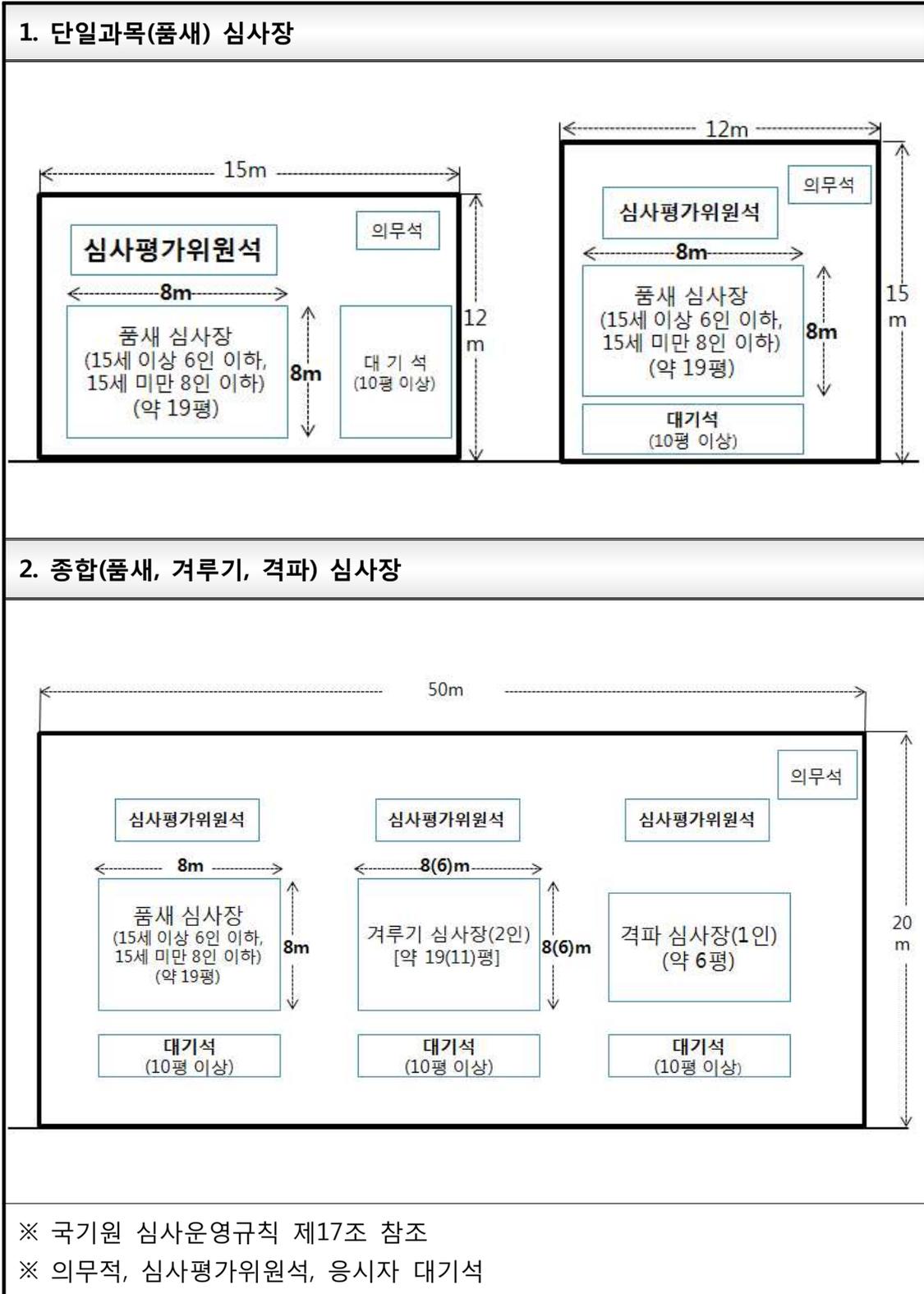
심사일자 :

심사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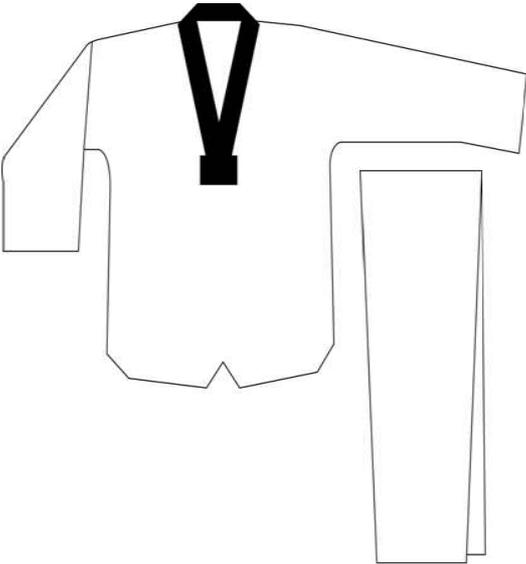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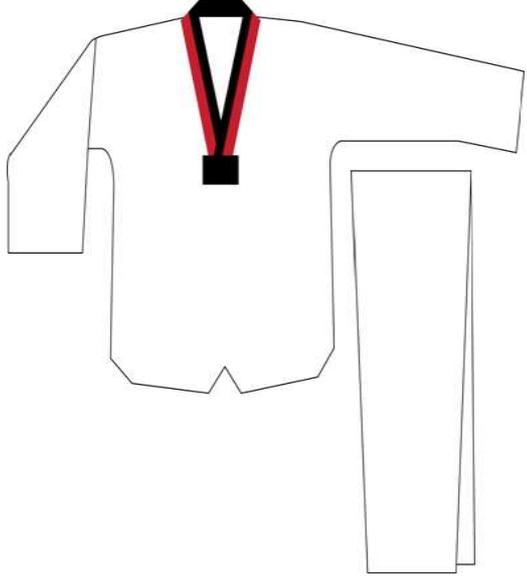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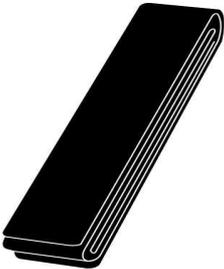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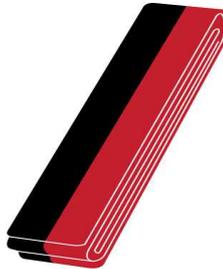
응시 번호	성명	기본 동작	품 새 1	품 새 2	품 새 3	품 새 4	품 새 5	겨루기 1	겨루기 2	겨루기 3	겨루기 4	겨루기 5	격 파 1	격 파 2	격 파 3	필답 논술	면접	판정 결과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종합채점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미시행 과목은 탄력적으로 양식을 조정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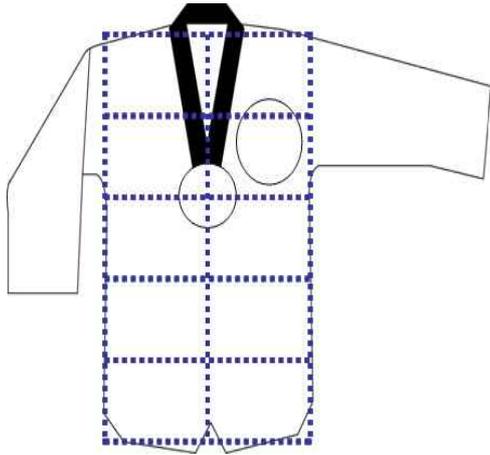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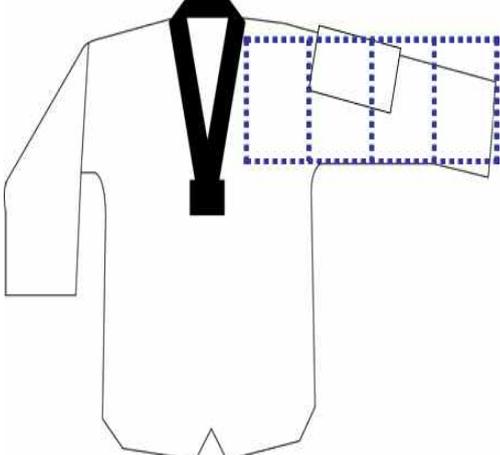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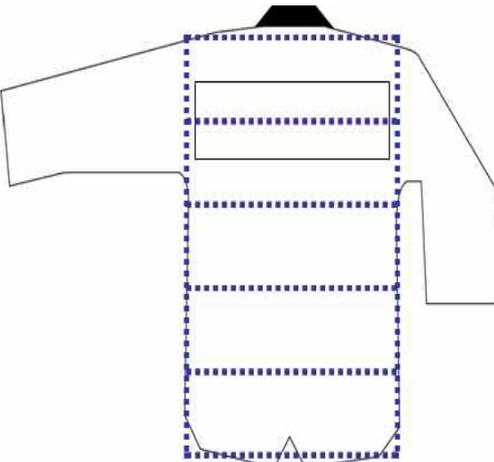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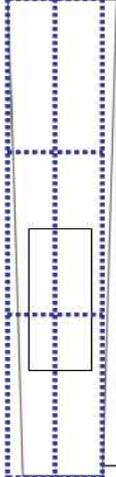
[표 10] 심사장 배치 평면도(예)



[표 11] 지정도복 및 띠

단 도복	품 도복
	
단 띠	품 띠
	

[표 12] 도복 부착물의 허용범위

<p>①</p> 	<p>③</p> 
<p>②</p> 	<p>④</p> 
<p>① 도복앞면 : 왼쪽 가슴 및 V자 밑부분 마크 부착 허용 (앞면의 1/10 크기)                  ② 도복뒷면 : 소속 및 도장명, 태권도 글자 및 마크 허용 (등판의 1/5 크기×2면)                  ③ 도복 팔 부분 : 왼쪽 팔에만 부착 허용 (어깨선 이하 1/4 크기)                  ④ 도복 바지 : 글자허용 (1/6 크기)</p>	

[표 13-1] 심사신청서(국내)

## 심 사 신 청 서

1. 품.단 번호 : \_\_\_\_\_  
2. 현 주 소 : \_\_\_\_\_ 연락처 ( ) - \_\_\_\_\_  
3. 성명(한글) : \_\_\_\_\_ (영문) : \_\_\_\_\_  
4. 주민등록번호 : \_\_\_\_\_ E-mail \_\_\_\_\_ 성별 : 남, 여  
5. 현 품.단 : \_\_\_\_\_ 품.단 (발급일자 : 년 월 일) 응심품.단 : \_\_\_\_\_ 품.단

상기 본인은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응시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반 명 함  
사진 1매

신청인 : \_\_\_\_\_ (인)

상기자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응시할 자격이 인정되기에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 \_\_\_\_\_ (인) 단, 고유번호 : \_\_\_\_\_

도 장 명 : \_\_\_\_\_ ☎ \_\_\_\_\_

국기원 원장 귀하

★ 기재시 주의사항

- 1) 1란은 2품.단 이상 응시자만 기재
- 2) 2, 3, 4란은 주민등록초본에 의거 정확히 기재(단, 외국인은 2란 기재시 국적까지 명기)
- 3) 신청인란은 승품.단 응심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실인을 날인
- 4) 양식의 ★표란은 시.도협회에서 협회장 관인날인

[표 13-2] 심사신청서(해외)

<b>심 사 신 청 서</b> <b>Application for Promotion Test</b>										증명사진 1매 폴로 붙이세요 1 ID-size photo attach with paste		
국 적 Nationality (Citizen)		주 소 Address			Tel		e-mail					
성 명 Name	이름 First	생년월일 Date of Birth			년 Year	현 품.단 Current Grade		응시품.단 Dan/Poom applied for		성별 Sex 남 / 여 M / F		
	Middle				월 Month	품.단증 번호 Dan Certificate No.						
	성 Last				일 Day	발급일자 Date of Issue						
본인은 국기원 승품.단 심사에 응시하고자 이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I submit this application to the Promotion Board of KUKKIWON for a Promotion Test. 신청일자 : _____ 신청인 : _____ Date of application : _____ Applicant : _____ 상기자를 국기원 승품.단 심의에 추천합니다. I honestly recommend the above person as a well-qualified applicant for the promotion test of Dan/Poom grades.												
국가 country	협회/도장명 Name of Association/Dojang			추천사범성명 Recommended by								
협회/도장 주소 Address of Association/Dojang					추천사범 단번호 또는 생년월일 Recommender's Dan Certificate No or Date of Birth							
Tel/ Fax/ e-mail		/ /										
<b>국 기 원 장 귀 하</b> <b>To: President</b> <b>KUKKIWON(World Taekwondo Headquarters)</b>												
NOTE 1. Name : The name must be printed or typed. 2. Dan Certificate No : The current Dan number must be the one given by Kukkiwon or WTF. 3. Applicant who staying abroad shall attach a document to confirm actual residence in the foreign country for more than 6 months.												
1. 성명 : 필자 또는 인쇄체 2. 현단증 번호 : 국기원 품.단 번호 기록. 3. 현지 심사국가의 국적이 아닌 타국적 응시자는 6개월이상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표 14] 공적조서

## 공 적 조 서

<앞면>

성 명	( 영문 )		
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국 적		전화번호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현단	승단일자
공 적 요 지 (50자 내외)	공 적 분 야 코 드		-
추천훈격	명예( )단, 추서단		※ 해당에 ○표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①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인	직 위 :	성 명 :	①

<뒷면>

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과거 포상 기록 (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